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정기 11차	일자	2023.3.13 19:00	장소	총학생회실(107관 208호)
----	--------	----	-----------------	----	------------------

0 성원 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	○	○	11/13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간호대 학생회, 간호학과 B반 선거 무산 -3/14(화) 비대위원장단 재선출, 3/15(수) 무산 공고 및 비대위 명단 공고 예정 -A반은 3/14(화), C반은 3/17(금) 18시까지 후보자 받을 예정 -3월 말 교수-학생 간담회 진행 예정 -간호대생 마스크 지원 관련하여 교학지원팀과 논의 중
경영경제대학	-3/7(화)부터 선관위 체제 보궐선거 진행 중
사범대학	-3/11(토) 교내 새터 진행 완료 및 참여자 대상 행사 피드백 진행 중 -집행부 리크루팅 면접 3/15(금), 3/16(토) 예정 및 3/20(일) 집행부 회의 예정
사회과학대학	-비대위원장단 재선출 완료 및 단과대학 재선거 진행 중으로 후보자 추천서 배포 완료 -새내기 학교 피드백 진행 완료
약학대학	.
예술대학	-신입생 환영회 내부 피드백 완료 및 신입생 대상 피드백 진행 중
의과대학	.
인문대학	-예비 후보자 추천서 진행 중 3/15(수) 후보자 톨미팅 예정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3/14(화) 통일공대 동아리 등록 공고 게시 예정 및 3/21(화) 단운위 논의 예정 -단학대회 회칙 개정 안건 상정 위해 논의 진행 중 -2개의 학과/부 전자투표 지원 확정 및 업체 온라인 구축 요청 예정
동아리연합회	-3/8(수)~3/10(금) 동아리박람회 진행 완료 -중앙마루 버스킹 행사 공지 완료 및 3/16(목)~3/17(금) 18시부터 21시까지 진행 예정

2 보고 안건

<p>중앙집행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행위원장단 : 총학생회 신입 국/위원 리크루팅 완료, 2023 리더스포럼 회의록 중대 중심 업로드 완료 - 연대사업국 : 상도역 근처 카페 프렌밀리와 제휴 협약 완료 - 일상사업국 : 회계사무국과 함께 학교 점퍼 공동 구매 내역 정리 중, 2023-1학기 불법카메라 탐지 전수조사 완료 및 결과 보고 완료 - 전략정책국 : 다국어 번역 TF 면접 진행 중, 중앙도서관 앞 흡연구역 실태조사 대면/비대면으로 나누어 진행 중 - 회계사무국 : 1차 중앙감사회의 참여 완료, 학교 점퍼 공동 구매 내역 정리 중
<p>산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위원회 : 축제기획단 모집 및 발대식 진행 완료 - 인권복지위원회 : 학술정보원 간담회 진행 완료, 중앙도서관 내 응급의약품 사업 정비 및 재개 예정 - 장애인권위원회 : 장애학생 교육권 가이드라인 작성 완료 및 교수자 및 학생진 대상으로 배포 예정 - 졸업준비위원회 : 2023-1학기 정장 대여 사업 재개, 졸업기념품 추가 수령 상시 진행 중, 졸업 대표자 연락처 취합 완료 및 단톡방 개설 예정
<p>기타</p>	<p>-</p>

3 논의 안건

1. 2022-2학기 예산자치제 회계 감사 관련 논의

1) CHIRO

-전액 지원 완료

2) NstsopO

-잔액 1,543원 반환 완료

3) TMI

-전액 지원 완료

4) 그날이오면

-전액 지원 완료

5) 뚜래빗 2번째

10차 중운위 논의 결과 : 총애틀티 비용(숙소 예약)으로 예산자치제 금액 모두 소진 및 결산 내역 재제출 후 재논의 예정

결산내역과 증빙자료 재제출 및 대관비 명목으로 예산 소진 확인 완료

-논의 결과 : 예산자치제 지원금 모두 소진한 것으로 확인하여 전액 지원

6) 랑데뷰

-13,385원 반환 요청했으나 회신 부재

-논의 결과 : 반환 재요청 후 차후 중운위 때 결과 보고 예정

7) 러버썰

(10차 중운위 논의 결과) [배구대회 간식비]로 47,700원 지출로 인해 해당 지출 미인정 및 30,435원 반환 요청

-30,435원 반환 요청했으나 대회 참가 시 사용한 교통비 35,000원(2,500원*14명)을 현금으로 지급 및 해당 지출 인정 가능한지 단체 측에서 요청

[논의 내용]

인문대 : 지출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어려움

부총 : 동감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예산자치제 지원이 어렵다

-논의 결과 : 증빙 자료 부재로 인한 교통비 지출 미인정 및 30,435원 반환 재요청

8) 루바토

-잔액 87,935원 반환 완료

9) 뮤즈

(10차 중운위 논의 결과) 공연장 대관비로 소진하였으나 송금 내역 외의 증빙 자료 부재로 송금 주체가 공연장 관계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제출 후 차후 중운위에서 논의

-공연장 관계자임을 증빙 자료(문자 내용) 추가 제출 완료

[논의 내용]

사과대 : 단순 문자 내용으로는 증빙 자료가 완전하지 않음. 사업자증 같은 증빙 자료 필요

논의 결과 : 공연장 관계자임을 증명 가능한 추가 자료 요청 예정

10) 미니언즈

(10차 중운위 논의 결과) 이체 내역 중, 입금 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송금 내역에 이름의 주체 파악 후, 예산 자치체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

-관계자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완료 및 송금 주체 확인 완료

-논의 결과 : 잔액 80,435원 반환 요청

11) 미래제품연구회

-전액 지원 완료

12) 배구광 3번째

-전액 반환 확인 예정

13) 비트라이스

-전액 지원 완료

14) 소름

-전액 지원 완료

15) 시퓨즈

-전액 지원 완료

16) 외인구단

-전액 지원 완료

17) 청룡

-전액 지원 완료

18) 함성

-전액 지원 완료

19) 흑룡

-전액 지원 완료

2. 2023-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논의

-2023.4.5.(수) 진행 예정

-예상 시작 시간 : 19시

-총학생회칙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매 학기 개강 이후 45일 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

[단학대회 일정]

-통일공대 : 3/29(수) 예정

-사과대 : 일정 미정이나, 전학대회 겹치지 않음. 4월 중순에서 말 예정

-경경대 : 5월 예정

-간호대 : 5월 예정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논의 사항-----

[제19조 7항 중앙집행위원장·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탄핵 발의, 심판권]

(논의 내용)

사과대 : 제3장 제19조 7항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탄핵발의나 심판이 직접적으로 수행 가능한가?

총 : 탄핵에 대한 안전 상정이 아닌, 안전 상정에 대한 발의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사과대 : 문제는 심판권으로, 탄핵 대상자들에 대해 심판권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혹은 총학생회장에게 있는 것인지? 제19조 10항을 보면 전학대회에서 탄핵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총학생회장단이 임명한 집행국장에 대하여 전학대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건 조항이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 : 제30조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운위 동의를 받아 각 국/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총학생회장이 온전한 인사권을 갖진 않으므로 심판권 또한 대표자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함

-1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전학대회 안전 상정에 대해 논의 예정 및 금일 회의 토대로 단과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진행 요청

[제14조의2 6항 탄핵심판 대상자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 토론 요청권, 증인 소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의2 6항 주어 불분명

탄핵심판 대상자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 토론 요청권, 증인 소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탄핵심판 대상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 토론 요청권, 증인 소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2항 단과대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제8장 단과대학 학생회 라는 명칭과 통일하여 사용

단과대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 연합회장단(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

[제19조 6항 중앙집행위원장·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소환권]

*제41조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립하고자 함

중앙집행위원장·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소환권

> 중앙집행위원장·각 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소환권

[제19조 7항 중앙집행위원장·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탄핵 발의, 심판권]

*제41조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립하고자 함
중앙집행위원장·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탄핵 발의, 심판권
> 중앙집행위원장·각 집행국장·각 위원장·특별기구장의 탄핵 발의, 심판권

[제23조(위치)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단, 정기 혹은 임시 전학대회 개최 전의 경우 제39조에 의거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제39조가 아니라 제37조가 올바른 조항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단, 정기 혹은 임시 전학대회 개최 전의 경우 제39조에 의거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단, 정기 혹은 임시 전학대회 개최 전의 경우 제37조에 의거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제24조 3항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 및 동아리 분과장 (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하며
학부제 실시의 경우 단대 회칙 상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부대표로
하고 최종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원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다.)]

* ‘단대’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단과대학이 올바른 표현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 및 동아리 분과장 (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하며
학부제 실시의 경우 단대 회칙 상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부대표로
하고 최종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원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다.)

>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 및 동아리 분과장 (단, 부회장이 있을 경우 포함하며
학부제 실시의 경우 단과대학 회칙 상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학부대표로
하고 최종 확대운영위원회 구성원 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59조 2항도 동일하게 적용(단대 > 단과대학)

[제26조 1항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
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소집할 수 있다.]

*확대운영위원회의 참여 주체는 대표자이므로, ‘재적’ 이 아닌 ‘재적 대표자’ 가 올바른 표현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
는 소집할 수 있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대표자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
할 시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4항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
회의 동의를 받아, 각 집행국 국장, 집행국원의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

*제41조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총·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 국
원으로 구성한다.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각 집행국 국
장, 집행국원의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

>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집행위원

장 및 각 집행국장, 국원의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

(추가 논의 내용)

총 : 집행국원의 임명 및 파면 또한 중운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필요 없다면 삭제할 것을 제안

사과대 : 선례가 있는지?

총 : 선례가 없으며 국원의 경우, 전학대회에서 전체 명단을 공개한 이력만 존재한다

사과대 : 사문화된 조항이기에, 집행국원에 대한 조항은 삭제 필요

통일공대 : 집행국장 및 위원장은 중운위의 인준을 받으나, 집행국원의 경우에는 중운위의 인준을 받지 않으므로, 집행국장에 대해서만 조항을 남겨두며, 집행국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권한으로 둘 것을 제안함

총 : 집행국원에 대한 제정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만약 개정한다면 집행국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여 ‘각 집행국 국장,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 로 한다

통일공대 : 또한 제3조의 ‘단,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의 내용이 제4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권리 제한에 대한 내용이므로 제4조에 관한 것임

총 : 집행국원 조항과 동일하게, 제30조 8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조항 또한 삭제 필요

사과대 : 제55조 2항 위원에 대한 것과 적용 필요(제55조 2항(위원장) 각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인준한다.)

총 : 제30조 8항에서 위원이라는 말만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임

약대 :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인준 받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사과대 : 위원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임

약대 : 해당 조항의 주체가 위원장인데 이는 위원이라 관계없음

총 : 사과대에서는 해당 조항 자체가 위원장의 권한이라 해석함. 제가 해석하기로는 위원장 자체에 대해 해석이므로 위원장 자체에 대해서 해석해주시면 됨

논의 결과 : 제30조 4항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 국장의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

제30조 8항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다.

(번외 논의)

사과대 : 이탈자 같은 경우는 묶음 의결 예정?

총 : 안건 상정 자체가 중운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항목 정리 후 중운의 논의 후에 결정.

예술대 : 제16조 위임장의 경우, 예술대는 학과/부가 아닌 전공인데 상급 단위가 단과대인지? 위임장의 경우에는 양식이 존재하는지?

총 : 상급단위 예술대학 맞고, 위임장 양식의 경우 전학대회 자료집 업로드 시에 같이 할 예정

사과대 : 제16조 6항 해당 회칙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대리인 또한 의결권 갖고 있음

총 : 대리인에 대한 조항이 없는 단과대, 학과/부가 없다면 상급 단위의 회칙을 참고했을 것임. 대리인이 상급단위 확인을 거치기에 의결권을 포함한 권한을 위임했음. 해당 회칙이 부재하다면 상급단위 회칙을 참고하여 제정에 대해 생각해보셔도 좋을 듯.

[제37조 9항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집행국장과 산하 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파면에 대한 동의 및 탄핵 발의, 소환권]

*명확한 명시를 위해 각 집행국장으로 수정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집행국장**과 산하 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파면에 대한
동의 및 탄핵 발의, 소환권
>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각 집행국장**과 산하 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파면에 대한
동의 및 탄핵 발의, 소환권

[제38조 2항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이 요구 또는 중앙운영 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띄어쓰기 및 제36조 2항에 근거하여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칭하고, 중앙운영 위원이 아닌 중앙운영위원으로
붙여쓰기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이 요구 또는 **중앙운영 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36조 4항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선거 시까지 중운위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선거 시까지 중운위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선거 시까지 중운위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제48조 1항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과대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본회는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기에 본회가 아닌 중앙운영위원이 문맥이 올바름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과대를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해당 단과대를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41조 2항 각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총·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 국
원으로 구성됨

각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43조(부서 및 기능)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각 집행국을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
다.]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총·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 국
원으로 구성됨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각 집행국을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제반 활동을 위해 **중앙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을 두고 그에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제49조(과학사회) > 제49조(학과/부 학생회)]

*다른 조항에서도 과>학과/부로 수정

*제16조에서 학과/부 이기에 통일 필요

[제52조 2항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또한 선거권을 가진 정, 준동아리 회원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됨

* ‘본회’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본회’가 아닌 ‘중앙운영위원’으로 개정
필요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동아리연합회장단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제55조 3항 (업무 및 권한) 각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고 한해 사업방향과 내역, 예산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내역 :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내용이기에 내역이란 말 대신 ‘내역’ 삭제

*제58조에 의거해 예산과 결산은 심의를 거치기에 심의라는 단어도 추가할 것
(업무 및 권한) 각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고 한해 사업방향과 내역, 예산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업무 및 권한) 각 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고 한해 사업방향과 예산 및 결산을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59조 2항 회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4개 단대 50인 이상 씩)]

회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4개 단대 50인 이상 씩)

>회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4개 단과대학 50인 이상 씩)

[제60조 2항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거직 학생 대표자는 각각 그 회칙에 의한다.]

논의 사항 : ‘선거직’이란 단어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으며, ‘선출직’이란 단어가 올바름

(논의 내용)

사과대 : 선출직이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맞음

부총 : 제60조가 선거 시기에 관한 내용인데, 선출직이라 하면 해당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 애매해짐

통일공대 : 선거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기타 선거 학생 대표자로 수정 건의

총 : 제60조 1항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선거, 2항은 단과대학이나 학과/부에 대한 선거 시기이므로, 전체를 반영하려면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거 학생 대표자로 수정 필요

경경대 :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학생 대표자 선거로 수정 제안

통일공대 :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학생 대표자의 선거 시기는’으로 수정 건의

사과대 :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학생 대표자의 선거 시기는 해당 단위의 회칙’ 수정 건의

논의 결과 :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거직 학생 대표자는 각각 그 회칙에 의한다.

>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학생 대표자 선거 시기는 해당 단위의 회칙에 의한다.

[60조 1항 총·부총학생회장은 임기 연도 전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주어랑 서술어가 문맥상 맞지 않음

총·부총학생회장은 임기 연도 전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 총·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 연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78조 2항 투표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 회칙 제6장에 따른다.]

논의 사항 : 제35조에서 중앙운영위원회의에 대한 언급이 있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 회칙 제6장에 따른다’는 불필요한 조항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과 통일성 유지 필요

투표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 회칙 제6장에 따른다.

> 투표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논의 내용)

*통일성, 깔끔성을 위함

투표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 1안 : 투표관리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2안 : 투표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한다.

사과대 : 구성보다 구성원이 좁은 의미

통일공대 : 앞선 조항과의 통일성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논의는 통일성과 무관함. 제78조 2항에서는 ‘투표관리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가 통일성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함

총 : 제61조 2항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2인은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기에 이에 대해 차별화를 두고자 두 회칙의 통일성이 없음.

논의 결과 : 회칙 검토 후, 차후 중운위 때 재논의 예정

[26조 1항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소집할 수 있다.]

*소집 주체 명시 필요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소집할 수 있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참고 조항 : 제18조 2항 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4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논의 사항-----

[제7조 다 세칙과 중선관위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거운동본부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문맥상 매끄럽지 못함

세칙과 중선관위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거운동본부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중선관위는 각 선거운동본부와 합의한 방식 및 세칙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거운동본부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8조 가 중선관위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사퇴 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행)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국) 2인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회(국) 임명 시 중선관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중앙집행위원회(국)는 의결권이 없다.]

*총학생회 회칙에 근거한 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반영

중선관위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사퇴 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행)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국) 2인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회(국) 임명 시 중선관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중앙집행위원회(국)는 의결권이 없다.

> 중선관위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사퇴 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행)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중 2인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회 2인 임명 시 중선관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중앙집행위원회 2인은 의결권이 없다.

(추가 논의 내용)

논의 사항 : 총학생회칙 제61조에 근거하여 중선관위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과 중앙집행위원회 중 2인으로 구성하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이 된다.(단, 중앙집행위원회 2인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에 의거하여 발언권이 없음을 추가

중선관위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사퇴 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행)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국) 2인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회(국) 임명 시 중선관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중앙집행위원회(국)는 의결권이 없다.

> 중선관위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사퇴 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행)과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중 2인으로 한다. 중앙집행위원회 2인 임명 시 중선관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중앙집행위원회 2인은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다.

(변의 논의)

사과대 : 선거시행세칙을 보면 ‘제0조 0항’ 이 아닌, ‘0조 가’ 로 되어있음. 국가 법령 및 총학생회 회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함. 선거시행세칙에도 통일된 세칙 적용 필요

총 : 해당 부분 반영하겠다

논의 결과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과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도 통일된 방식 적용

[8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은 당해 총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은 당해 총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은 당해 총학생회장으로, 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부중선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동일한 맥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지칭을 다르게 표기한 부분 통일 예정

[30조 다 중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선관위는 모든 선본에게 선거인 명부 요약본을 공개 할 수 있다.]

*불필요한 단어 반복

중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선관위는 모든 선본에게 선거인 명부 요약본을 공개 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중선관위는 모든 선본에게 선거인 명부 요

약본을 공개 할 수 있다.

[34조 나 중선관위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탈자

중선관위위는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선관위원은 입후보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위별 논의를 통해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뿐만 아니라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 요청
- 맞춤법에 관한 개정 사항은 폐회 이후 일괄적인 안내 예정
- 대표자회의시행세칙의 경우, 통과안건으로 진행하였으나 전학대회 시행세칙에서는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 개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 요청 바람

4 의결 안건

1.

제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5 기타 안건

1. 기타 건의사항

- 사과대 : 총학생회 제휴 어디에 공유되고 있는 지? > 총학생회 sns를 통해 공유 중
- 동연 : 동아리대표자회의 개강 이후 30일 내 진행해야하기에 전학대회와 날짜가 겹칠 수도 있음. 전학대회 날짜가 확정이라면 피해서 진행 예정 > 4/5(수) 전학대회 확정으로 생각 바람